

#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 제52조의2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,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자격(관내에 위치한 건축사)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제15조의6(실내건축) 신설
  -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 
: 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
  - 실내건축 검사 주기  
: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번
- 제15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) 제2항 수정
  - 제1호 중 “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”를 “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”로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'21.11.26. ~ '21.12.0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실-17485(2021.11.30.)호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17485(2021.11.30.)호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45001(2021.11.29.)호)

##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1호 중 “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”을 “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,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6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 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는 「건축사법」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<u>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.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5조 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 「강원도 건축 조례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5조의6(실내건축) 법 제52조의 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,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건축법

**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**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52조의2(실내건축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.

② 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(週期)는 건축조례로 정한다.

## 건축법 시행령

**제20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**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
2.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대행건축사”라 한다)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61조의2(실내건축)**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다중이용 건축물
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건축물
3.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(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허가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100